# 「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」 참 여자 모집 공고

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창원시, 진주시, 김해시, 양산시, (사)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의 이중 구조 해소와 2·3차 협력사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「경남 자동차 부품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5년 3월 14일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

## │. 사업 총괄

#### 가. 사업 개요

- O 사 업 명 :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
- O 지원 대상 -
- 기업: 경남 지역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자동차 제조 업종 사업체\* \* 자동차부품 제조 업종 사업체:
  - ①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 해당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
  - ② 상생협력 협약 기업(현대차, 기아) 협력사(23차) 중 우선지원대상기업(고용보험 업종코드 무관)
- 근로자 : 경남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정규직 취업자 /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자 ※ 세부 사업별 근로자 인정 채용일 기준 상이
- □ 지원 내용
  - 자동차산업 일채움 지원금 (신규취업자 지원금)
  -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 100만원 지급
  - 자동차산업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(장기근속자 지원금)
  - 사업주가 추천하는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1인당 150만원 지급
  - 정부:사업주=2:1 매칭 조건
  - 자동차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금 (통근버스 임차비,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)
  -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목적 투자 기업에 최대 1,000만원 지원, 자부담 10% 조건 ※ 구체적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

#### ·· O 사업장 제외 요건 ·

- 근로자 파견·용역·도급 등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
-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- 고용보험 체납기업
- ※ 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시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56조 제2항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
-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
-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

#### ─ O 근로자 제외 요건 -

-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※ 단,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
-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는(재취업한) 자
-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재직중인자 ※ 단, 2024.4.25. 이후 기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(인턴 포함)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
- (신청일 기준)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  - ※ 단, 휴업/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,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
- 근로자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경호업, 시설관리서비스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 관계에 있는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※ 단, 거주(F-2) 영주(F-5) 결혼이민지(F-6) 은 지원 가능
-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
-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
-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
- \*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하며,
 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(지원금액의 최대 500%),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- 신청기간 : 2025. 3. 14.(금) ~ 2025. 6. 30.(월) 18:00 까지
  - O 신청방법: 경남자동차도약센터 온/오프라인 및 문의처 이메일 접수
    - 홈페이지 : https://winwin.gninnobiz.or.kr/
    - 창원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
    - 김해 :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9호
  - O 문 의 처 :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(055-312-2368/innobizdb@naver.com)

# Ⅱ. 세부 지원 내용

## 1. 자동차산업 일채움 지원금

#### 가. 사업 개요

O 사 업 명 : 자동차산업 일채움지원금

○ 지원규모 : 160명

O 지원대상 : 경남 소재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자동차 제조 업종 사업체에 '24. 4. 25.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

○ 지원내용 : 도내 자동차 제조 업종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근속 시\* 100만원 지급

※ 공고일 이전 취업자 근속 산정 기일은 공고일('25.03.14.(금))로부터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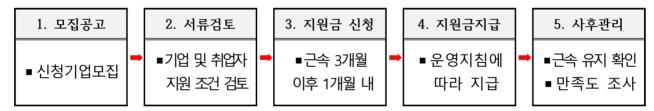
O 지원방법: 3개월 근속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

#### 나. 신청 자격

- O 경남 소재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자동차 제조 업종 사업체에 '24, 4, 25, 이후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
- O 나이(만 15세 이상) 및 직무 제한 없음
-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 중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의 100% 이상을 받는 자
- 공고일 이전 취업자의 경우 공고일('25.03.14.)로부터 근속 기간 산정
- O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것

#### 다.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3. 14.(금) ~ 2025. 6. 30.(월) 18:00 까지
- 정규직 취업 후 사업 신청 및 3개월 이상 근속한 뒤 지원금 신청
- 지원금 신청 시 입사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의 근속기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- 신청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될 수 있음
- 신청방법: 경남자동차도약센터 온/오프라인 및 문의처 이메일 접수
  - 홈페이지 : https://winwin.gninnobiz.or.kr/
  - 창원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
  - 김해 :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9호
- O 문 의 처 :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(055-312-2368/innobizdb@naver.com)
- O 신청 및 지원 절차



#### O 신청서류

순번	구분	신청서류
1		[서식 1] 협약서
2	사업주 신청	[서식 2] 자동차산업 일채움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
3	선정   서류	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사업주)
4		[서식 3-1] 사업주 확인서
5	근로자	[서식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(근로자)
6	제출 서류	[서식 4-1] 근로자 확인서
6	지원금 신청 시	[서식 5] 자동차산업 일채움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

- ※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※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2. 자동차산업 장기근속자 인센티브

#### 가. 사업 개요

- O 사 업 명 : 자동차산업 장기근속자 인센티브
- 지원규모 : 100명
- 지원대상 : 경남 소재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자동차 제조 업종 동일 사업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업주 추천 근로자
- 지원내용: 1인당 총 150만원 인센티브 지급
- 지원요건 : 지원금 150만원 정부:사업주 2:1 매칭 조건 기업 당 피보험자수의 30%까지 신청 가능
- 지원방법 : 선정위원회 개최 후 선정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

#### 나. 신청 자격

-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업종 사업체<sup>\*</sup>에 3년 이상 재직한 사업주 추천 근로자
- O 나이(만 15세 이상) 및 직무 제한 없음
-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 중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의 100% 이상을 받는 자
- O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

## 다.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3. 14.(금) ~ 2025. 6. 30.(월) 18:00 까지
- 신청방법: 경남자동차도약센터 온/오프라인 및 문의처 이메일 접수
  - 홈페이지 : https://winwin.gninnobiz.or.kr/
  - 창원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
  - 김해 :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9호
- O 문 의 처 :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(055-312-2368/innobizdb@naver.com)

#### O 신청 및 지원 절차

1. 모집공고		2. 서류검토		3. 지원자선정		4. 지원금지급		5. 사후관리
■ 신청기업모집	-	■ 지원 조건 검토	1	■ 선정위원회 개최	<b>→</b>	■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	<b>→</b>	■ <del>근속</del> 유지 확인 ■ 만족도 조사

- 신청자에 대한 선정심사를 개최하여 선정된 자에 한해 지원

## O 신청서류

순번	구분	신청서류			
1		[서식 1] 협약서			
2	사업주	[서식 2]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서(사업주)			
3	신청	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사업주)			
4	서류	[서식 3-1] 사업주 확인서			
5		[서식 4]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추천 근로자 명단 제출서			
7	근로자 제출	[서식 6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(근로자)			
8	세울 서류	[서식 6-1] 근로자 확인서			
9	지원금 신청시	[서식 7]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			
10		[서식 8]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사업주 부담금 수령확인서			

- ※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※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라. 선정평가 기준 심사(안)

## O 선정평가 기준안

구	분	평 가 항 목	배점	비고
합 계			100점	
근속경력	신청기업 근속연수	■ 근로자가 인센티브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확인	50점	
		□ 대한민국명장·숙련기술전수자 : 20점 □ 우수숙련기술자 : 15점		
기술· 기능인력	재직자 기술력	□ 기술사 또는 기능장 : 10점 □ 기사 : 7점 □ 산업기사 : 5점 □ 기능사 : 3점 ※ 유리한 한가지 자격만 인정 (중복 불가)	20점	
수상경력	지역사회 기여	□ 훈·포장 : 10점 □ 대통령·총리 표창 또는 상장 : 8점 □ 장·차관급 이상 청장·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: 5점 □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: 3점	10점	종류 무관
직무		■ 근로자의 신청기업 직무 확인	20점	
근로형태 (가점)		■ 근로형태가 정규직일 경우, 2점 추가 부여	2점 (가점)	

<sup>※</sup> 증빙자료 미제출 및 누락 시 가점 제외

<sup>\*</sup> 동점자 발생 시 신청 기업 장기근속자 우선 선발

<sup>\*</sup> 채점 기준은 기관 사정에 따라 지자체 논의 후 변동될 수 있음

## 3. 자동차산업 근무환경개선지원금

#### 가. 사업 개요

- O 사 업 명 : 자동차산업 근무환경개선지원금
- 지원규모: 21개사
- 지원대상 : 경남 소재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업종 사업체 중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통근버스 운영, 공동이용시설(휴게실,화장실,샤워실, 기숙사 등) 개선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 예정인 기업
  - ※ 공고일('25.03.14.) 이후 1명 이상 채용 조건
- 지원내용 : 근무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90% 지원(기업당 최대 1,000만원 한도)
- 지원방법 : ① 지원 대상 기업 근무환경 개선 투자 여부 확인 및 선정
  - ② 공고일('25.03.14.) 이후 정규직근로자 1명 이상 채용
  - ③ 지급 조건 확인 후 지원금 1회 지급
- 신청기간 : 2025. 3. 14.(금) ~ 2025. 6. 30.(월) 18:00 까지

#### 나. 신청 자격

- 경남 소재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업종 사업체 중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통근버스 운영, 공동이용시설(휴게실,화장실,샤워실, 기숙사 등) 개선에 투자를 했거나 투 자 예정인 기업
- 최종 선정 기업은 공고일 이후 1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원금 지급 시까지 고용유지 해야함 (채용 후 10일 내 채용자 명단 제출 필수)
- O 지원금 지급 전 채용 근로자 퇴사 시 대체 채용 필수
- 나이(만 15세 이상) 및 직무 제한 없음
-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 중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의 100% 이상을 받는 자

- 동일·유사 투자 건으로 타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거나 해당 사업의 수혜자와 실제 근무 환경개선 투자 수익처가 동일한 경우 지원 불가함
- O 그 외 사업장 및 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
- 세부 지원 요건

#### ■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

- 지원대상기간 : 2025년 1월 ~ 9월 임차료 합계 금액 기준 산정
-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통근 목적 차량
- ※ 사업 지원 시 차량 크기 제한 없으나 추후 선정 시 조정 가능
- 공동이용시설 개선 투자 지원
- 사업주 소유의 사업장의 공동이용시설 대한 투자금 지원
- 휴게실, 화장실, 샤워실, 기숙사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개선

#### 다. 신청 방법

O 신청기간

신청기간	업체 선정일
2025. 3. 14. ~ 2025. 6. 30.	2025. 7월 中

- 신청방법: 경남자동차도약센터 온/오프라인 및 문의처 이메일 접수
  - 홈페이지 : https://winwin.gninnobiz.or.kr/
  - 창원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
  - 김해 :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9호
- O 문 의 처 :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(055-312-2368/innobizdb@naver.com)
- O 신청자에 대한 선정심사를 개최하여 선정된 자에 한해 지원

## O 신청 및 지원 절차

1. 공고·접수	2. 서류·현장 실사			3. 업체 선정		4. 선정통보 및 사업추진		5. 정산 및 사후관리	
■ 신청기업모집	•	■ 지원 조건 검토 ■ 현장 점검	•	■ 선정위원회 개최	<b>→</b>	■ 선정통보 ■ 사업주 투자	<b></b>	■지원금 지급 ■만족도 조사	

## O 신청서류

순번	구분	신청서류		
1		[서식 1] 협약서		
2		[서식 2]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참여 신청서		
3	참여 신청 시	[서식 3] 근무환경 개선 계획서		
4		[서식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사업주)		
5		[서식 4-1] 사업주 확인서		
6		[서식 5]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채용자 명단 제출서		
7	채용 시	[서식 6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(근로자)		
8		[서식 6-1] 근로자 확인서		
9	지원금 신청 시	[서식 7] 근무환경개선지원금 지급 신청서		
10		[서식 7-1] 사업주 확인서		
11		[서식 8] 근무환경 개선 추진결과 보고서		

- ※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※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라. 선정평가 기준 심사(안)

## O 선정평가 기준안

구	분	평 가 항 목	배점	비고
합	계		100점	
기업구분	2·3차 협력사 여부	■ 상생협약 2·3차 협력사 여부 (현대·기아차)	20점	
사업 중복 참여	'24년 사업참여	■ 사업 신규참여 기업 우대	15점	
소재지	컨소시엄 지자체 소재기업	■ 창원,진주,김해,양산 소재 기업 <b>건소시엄 지자체 소재 해당없음</b> 20 15	20점	
기업규모		■ 영세 중소기업 선정 우대	15점	
신청마감일 기준 고용자 발생 여부		■ '25.06.30.까지 채용자 신고 서류 접수 시 인정 예 아니오 20 15	20점	
투자금액		■ 자부담 금액 제외 지원 인정 금액 기준   1,000만원 이상   800만원 이상   이외   10   8   5	10점	

<sup>※</sup> 증빙자료 미제출 및 누락 시 가점 제외

<sup>\*</sup> 동점자 발생 시 2·3차 협력사, 소재지, 사업중복참여 순 우선 선발

<sup>\*</sup> 채점 기준은 기관 사정에 따라 지자체 논의 후 변동될 수 있음

# 마. 지원금 지급 절차 예시

단 계	내 용	세부내용
	사업 지원 (기업체)	<ul> <li>자동차 도약 센터 온/오프라인 신청</li> <li>온라인 사이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</li> <li>→ 사업 신청 서류 제출 ('25.06.30.까지)</li> </ul>
	<b>↓</b>	
사업체 선정	선정 검토 (자동차산업 도약센터)	- 사업 신청 서류 검토 - 현장점검을 통한 필요성 확인
	<b>.</b>	
	최종 선정 (자동차산업 도약센터)	- 지원 우선순위 반영 지원 기업 선정 - 필요 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- 지원 업체 최종 선정 및 통보 ('25.7월 中)
	<b>+</b>	
	신규 인력 채용 (기업체)	- 공고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1명 채용 (고용보험취득일 기준)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채용 ① (근로계약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② 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④ (임금수준) 최저임금의 100% 이상을 받는 자 ⑤ (고용상태)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⑥ (기타)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자 ⑦ (기타)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기업에 재취업이 아닌 자
지원금 지급	•	
	지원금 지급 신청 (기업체)	- 환경개선작업 종료 후 10월 중(예정) 서류 제출 요청 시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
	<b>I</b>	
	지원금 지급 (자동차산업 도약센터)	-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 - 신규 채용 인원 근로조건 확인 및 현장 실사 후 지원금 순차 지급
	•	
사후관리	사후관리 수행 (자동차산업 도약센터)	- 근무환경 개선 시설 유지 확인 -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